
**2025년 사천바다케이블카 승강기시설
유지보수 용역 과업지시서**

2024. 12.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승강기시설 유지보수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명

2025년 사천바다케이블카 승강기시설 유지보수 용역

2. 목 적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장 내 설치된 승강기시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의 점검·정비·보수·청소 및 자체검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시설물 기능 유지 및 내구성 증대,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3. 과업개요

1) 대 상

구분	승강기고유번호	설치장소	층수 및 길이
엘리베이터	8096-769	대방정류장 승객용	3층
	8096-770	대방정류장 캐빈반기고	3층
	8096-771	각산정류장	3층
	8096-773	복합문화지원시설	3층
에스컬레이터	8805-205	대방정류장 준옥외	28.5m
	8805-206	대방정류장 준옥외	28.5m
	8805-207	대방정류장 옥내	7.5m
	8805-207	대방정류장 옥내	7.5m

2) 업무내용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체점검
- 점검 및 취약개소 점검
- 예방점검 및 유지보전, 정비 및 보수
- 관계법규에 의한 검사대행 및 법적 제한을 받는 업무의 법적책임
- 기기의 이력관리 등

4.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착수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12개월)로 한다.

I. 과업설명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사천바다케이블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기 제조 시 부여된 기능과 성능을 유지시키며 고장에 의한 인명사고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예방정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 (계약)

본 계약의 기간은 2025. 01. 01. ~ 2025. 12. 31. 까지로 한다.

제3조 (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용역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조항을 위반한 때
2. 용역업체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때
3. 월 2회 자체점검 및 보수를 미실시할 때
4. 용역업체가 해산, 청산,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갈 때

②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이견)

본 계약서상에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5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소송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장 일반사항

제1조 (정의)

유지보수라 함은 장비의 고장 시 수리 및 장비의 고장 예방을 위한 점검 정비를 행하여 장비의 기능이 원활하도록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시간)

용역업체가 정비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보수시간은 '사천바다케이블카'의 영업 및 행사 등을 고려하여 공단 케이블카운영팀과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장비 고장 시는 통보 후 한 시간 이내 출동한다. 만일 영업 중이라 작업이 제한적일 경우는 응급 복구를 실시하고, 장비 모니터링 및 원인 파악을 통해 가용 작업 시간에 최종 복구를 실시한다.

제3조 (결과제출)

- ① 호기 당 매월 2회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수시점검과는 별도) 매월 말일 이전에 “국가승강기정보센터(<http://www.elevator.go.kr>)”에 점검사항을 등록하고 승강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 ② 점검 중 특이사항(기계이상, 고장)이 발생/발견 되었을 경우, 승강기안전관리자에게 사진 및 간략한 서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계약자는 본 과업을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 (손해배상)

본 계약의 이행 중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업체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증명서 제출

제5조 (책임)

- ① 용역업체의 유지관리용역 제공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의 사고와 용역업체의 보수원이 작업 중 입는 사고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용역업체의 유지관리용역 제공은 용역업체가 작성한 유지관리일지의 내용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점검보수 미비로 해석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용역업체에게 귀속시킨다.

③ 점검보수계약 기간 중 점검보수의 결함 등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될 경우, 모든 추가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또한 용역업체는 제1항의 승강기 사고에 의한 피해배상을 위하여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1조의3(보험가입)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계약후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며, 이를 본 계약기간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점검 및 고장수리)

①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비에 대하여 월 2회 정기적으로 점검, 보수하되 각 기기를 청소하고 급유하며 안전장치의 기능검사, 점검 등을 행한다.

②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의 불시 고장 시 발주기관은 신속히 용역업체에게 그 상세한 고장내역을 통보, 수시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연락받는 즉시 기술자를 파견하여 복구, 수리하여야 한다.

③ 용역업체는 정기점검 및 고장수리 중 소모성자재(신호용 LAMP, 청소용구, FUSE, 형광등, 걸레 등 소모성자재)는 현장에서 확인 후 조치한다.

④ 장비교체 및 대수리는 수요자부담으로(발주기관)이 하고 소액 부품교체 등은 용역업체가 부담하여 수리한다. 즉 점검업무 중 교체정비 또는 보수작업 필요시 계약자 부담으로 (정비 인건비를 제외한) 월간 용역비 10% 범위 내에서 기기, 부품, 기타 필요자재 (개당 시중가격 기준)는 즉시 구매 정비 하여야 한다. 고장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운용책임자 및 감독자의 확인 검사를 받고 즉시 교체한다. 수리비에 대한 비용은 내역서,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 (법정검사 합격의 의무)

법정검사에 합격을 시켜 계속사용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즉, 용역업체는 승강기 법정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며, 법정검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미리 정밀점검(청소 포함)하여 정기 법정검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수검에 필요한 수수료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발주기관 부담하고 불합격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제8조 (유관기관 협조 요청시 지원 의무)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에 대하여 국가 기관에서(경찰서, 경찰서 등) 협조 요청시 기술 인력 지원을 한다.

제3장 용역비 지급

제1조 (지출방법)

- ① 과업수행 후 용역비 지급은 용역업체의 청구에 의해 매월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계약완료일 이후 발주기관의 사유로 차기년도 유지관리용역의 시행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본 과업에 의거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기간동안 용역비는 계약금액기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조 (권리의무의 양도)

용역업체는 본 계약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4장 설비운용 교육의 의무

제1조 (교육)

유지보수 도급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의 운용자 정상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본 설비의 운용 요령 및 정비내용을 본 설비운용자에게 월1회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자료 변경 시 등은 변경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사항

제1조 (의무준수)

본 설비의 유지보수 기술자가 의무준수를 다하지 못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에 운용에 손상이 있을 시는 도급자가 즉시 원상복구를 한다.

제2조 (추가지시 이행)

①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비의 원활한 운용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지보수 사항이 추가 지시되어도 용역업체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설치, 감리, 설계, 운영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필요시 직접 방문 하여 자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설 전체에 대하여 과업수행을 하되, 계약일 이후부터 계약종료기간 내에 리모델링, 개보수, 기타 불시 상황변화로 용역수행 상황발생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무선 또는 공문요청 시 즉시 (주, 야 심야 구분 없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과업수행 지체로 인하여 손해발생시 피해보상과 법적 책임을 진다), 수행결과를 토대로 대안필요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불시 점검 시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발생하는 소요비용은 계약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단, 불시 점검결과 정비 필요로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정비비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과업 수행에 사용한 자료나 통계 등은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과업수행으로 안전사고 발생과 시설물 등의 손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와 시설물 손실에 대한 민·형사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⑥ 계약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접한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시설 및 조치를 취한 후 점검을 하며, 시설물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가했을 시는 계약자가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II. 특기사항

제1조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사천바다케이블카) 승강기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 (관련법규 준용)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의 법과 규정 등을 따라야 한다.

1. 승강기안전관리법,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2. 전기설비기술기준
3. 건축공사(기계부분)표준시방서
4.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제3조 (착수서류 제출)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아래의 용역 착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착수계(착수계, 보안각서, 계약내역서 등)
2. 용역 수행 계획서(점검 및 정비계획, 소모품 확보 계획 등)

제4조 (용역비 청구)

매월 5일까지 전월 용역 수행실적을 발주기관이 승인한 서식으로 아래의 서류 제출하고 용역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자체점검 및 일상점검 기록부
2. 호기별 정비 및 보수 이력카드
3. 고장보수 내역서(원인, 고장유형, 교체부품)
4. 자재(소모품, 지급자재) 사용 내역서
5. 작업지시 이행 보고서 등
6.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사진 및 서명일지 등

제5조 (용역원의 자격기준 등)

- ① 검사, 점검원의 기술부족이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 용역업체는 즉시 해당 용역원의 교체 등 적합하게 조치해야 한다.
- ② 용역업체의 대외적인 명의를 소속된 법인명으로 표시하고 용역원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공공시설 관리자의 품의를 지켜야 한다.

제6조 (용역수행)

- ① 점검 및 정비작업은 월 단위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점검일정을 변경하거나 점검을 누락한 때에는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률과 기술표준원이 고시한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라 매월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이상개소가 발견되면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
- ③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승강기의 검사)의 사전 준비 및 입회, 사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비 불량 등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재검사를 받을 경우 모든 비용을 용역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일상점검은 승강기의 기능과 청결, 파손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외관점검으로 월 1회 이상 시행하고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가 발견된 때에는 신속하게 수리하여 정상적인 가동상태를 확보해야 한다.
- ⑤ 예방정비는 부품의 오동작으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롤러와 같은 각종 회전체와 스위치 접점, 센서 등의 급유, 조정, 교체, 청소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매월 예방정비 실적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⑥ 용역수행 중 승강기의 제작 또는 설치상의 하자를 이유로 점검 및 정비, 고장 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으며,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승강기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설비로 주간에 정기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되 이용자가 있을 경우 가능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주간 점검 및 보수시에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가 예상될 경우 야간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적정 대가를 별도로 지불할 수 있다.

⑧ 승강기의 보수 작업이나 보관을 위해 타 업체와 계약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용역업체는 현장입회 및 기술자문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고장보수)

① 용역업체는 고장 등의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24시간 전문기술자가 대기하여야 하고,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인원 및 연락처 변경시에도 필히 비상연락망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 사고 및 고장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숙련된 기술자를 출동시켜 신속하게 보수하여야 하며, 중대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피해나 민원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출동하여 최우선 순위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고장보수를 완료한 후에는 고장·수리일지에 고장 원인 및 보수내용, 신고 접수 및 완료된 시각 등을 기재하고 해당 운행관리자(또는 근무책임자)의 확인 날인을 받아 당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합동정밀점검 등)

① 용역업체는 승강기의 반복적인 고장 등 안전운행 상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자의 입회하에 합동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용역업체는 합동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고장원인, 정상기준치, 부품의 마모상태 및 교체사유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③ 용역업체는 승강기 사고 및 중대고장, 반복적인 고장, 대형행사 대비 등 이용자 안전 확보와 편의향상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특별점검을 지시하는 경우 용역업체는 지체없이 특별점검을 이행하고 그 결과 및 대책 등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승강기의 장기적 유지관리 차원에서 특정 부품 내지 부위를 별도로 지시하여 정밀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 단, 상기점검 등이 유지보수업체의 일반적 기술한계를 넘어 제작사 또는 전문기관의 점검이 필요할 경우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에게 보고 및 승인 후 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0조 (승강기 부품의 확보)

용역업체는 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다음의 승강기 부품(통상사용에 따른 열화, 마모에 대해 보완 또는 교환을 빈번히 하는 소모품 또는 부품)등을 항상 확보하여 점검 보수시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 각종 오일류(오일시일 포함) 및 구리스와 전기적 방청제
2. 각종 체인 및 벨트(단, 핸드레일 구동 및 스텝체인은 제외한다.)
3. 각종 볼트, 너트, 와셔 등
4. 각종 승강기에 부착된 법적 안전표지(스티커 포함)
5. 각종 접점, 퓨즈, 저항, 전선, 릴레이
6. 각종 계전기류, 차단기류, 단자대 및 부속자재
7. 각종 스위치 및 조작버튼(커버 등을 포함), 센서 및 안전스위치
8. 각종 조명에 관계되는 등기구, 램프(안정기등을 포함한다.)
9. 각종 제어판넬 내부의 습기제거를 위한 방습제
10. 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장비
- 11 기타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소모성 자재 일체

제11조 (승강기 부품관리 등)

- ① 용역업체는 부품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부품공급이 장시간 소요되는 품목은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교체빈도가 잦은 부품은 일정량을 확보하여 선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확보하여야 할 부품목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용역업체는 필요시 주요부품의 교체 및 주요 정비작업에 대하여는 작업사진을 제출하고, 잔여 발생품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 ③ 사고 또는 고장의 발생으로 주요부품 및 자재를 긴급히 사용해야 할 경우 용역업체는 자체 조달하여 우선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물품대금 또는 현품을 용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이 요구 시 승강설비에 소요되는 자재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재료비를 조사하여 발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공급)

용역업체는 소모성 승강기 부품을 발주기관에게 필요 시 공급하여야 합니다.

1. 소모품은 용역업체가 무상으로 공급한다.(무상이란 재료비, 노무비 기타 모든 비용을 용역업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부품의 교체 시 재료비 또는 재료는 발주기관이 지급을 하며, 교체는 용역업체가 무상으로 시행한다.
3. 주요장치 등의 교체, 도장 및 엘리베이터 카내 바닥재 등의 교체 및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장치 보수작업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발주기관의 산출방법에 의거 별도 지급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필요에 따라 다른 업체에 보수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작업중 운행 일시정지)

용역업체는 점검 및 보수 등 작업중에는 승강기의 운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때,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부착(설치)하여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정기검사의 준비)

용역업체는 관련법에 의거 승강기 정기검사 준비를 하여야 하며, 보수 또는 정비불량으로 인한 재검사 시 모든 비용을 용역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관리)

- ① 용역업체는 계약 후 용역착수 전 용역시행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용역업체는 점검 및 보수 작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간이펜스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카 상부에서 작업 또는 점검 시에는 안전벨트와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③ 용역업체는 보수장비 및 기구의 취급은 안전하게 조치한 후 사용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④ 용역업체는 계약 후 승강설비에 부착된 법적 안전표지를 정비하거나,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16조 (화재예방)

- ① 용역업체는 점검 및 보수에 참여하는 작업자에게 충분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용접 등 화재 위험성이 있는 작업 시에는 소화기의 비치 및 기타 소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③ 승강기 및 승강기 부근에 흘린 윤활유, 기름먼지 등이 점착되지 않도록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 사항)

- ① 용역업체는 본 과업지시서나 규정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②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하자기간 내 고장에 대한 하자 여부 판단은 발주기관이 하며, 하자사항에 대한 수리는 전체적으로 제조업체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용역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